# 신용정보의 집중과 법적 문제

오 길 영*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신용정보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
1. 현행 입법의 문제점
2. 쟁점사항의 분석
Ⅲ. 신용정보 운용구조에 대한 검토
1. 신용정보 수집단계에 대한 검토
2. 신용정보 집중단계에 대한 검토
Ⅳ. 나오며

## Ⅰ. 들어가며

아직도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소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충격은 그리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쏟아낸 각종의 대책[1]과 해당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2]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3]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사건은 그야말로 '초유'의 '대란'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2014.1.8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2014.1.22자.

2) 경향신문, "정보유출 카드사 5월16일까지 영업정지, 신규 모집 등 제한", 2014.2.14자; 이투데이, "17일부터 카드사 영업정지, 제재 강도 역대 최고", 2014.2.16자; 컨슈머타임스, "정보유출 카드사 17일부터 일부 영업정지", 2014.2.17자 등.

3) 국민일보, "의사·일반회원 15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4.2.27자; 머니투데이뉴스, "의사협회, 의료인 15만6천명 개인정보 유출에 화들짝", 2014.2.27자; 조선일보, "국민 포털 네이버도 뚫렸다…회원정보 1만 7000건 유출", 2014.2.27자; 한국경제, "네이버 '해킹되지 않았다…MBC 회원정보 유출 보도는 오보'", 2014.2.27자 등.

지금까지 번번이 지속되어온 각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우리는 별일이 아닌 듯 묵과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보'가 곧 '돈'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기에는 일련의 사건들의 파장이 다소 약했었나 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현대인의 경제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던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었다. 즉 '정보의 유출'이 아니라 '돈의 유출'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의 우리네 불감증에 대한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필자역시 한 명의 피해자로서 참으로 유감인 것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이겠으나, 긴 시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주장해 온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경종'을 울린 금번의 사태가 그리 불쾌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취급받으며 급물살을 타오던 소위 '빅데이터' 열풍에 대하여 제대로 '일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더없이 기쁘기도 하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냉철한 비교형량이 없는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정책의 추진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이다.[4] 본고 또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다. 즉 '금융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지금껏 다소 느슨하게 조여진 채로 지나왔던 신용정보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꼼꼼히 비교형량해 본다는 입장에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고의 취지이다.

4) 이러한 입장에 대한 상세는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일감법학 제27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참조.

# Ⅱ. 신용정보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

## 1. 현행 입법의 문제점

### 1.1 입법의 체제에 대한 검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를 하나의 개인정보로 바라보는 이상 신용정보에 관한 일반법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말 그대로의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은 법체제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신용정보가 민간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정보라 할지라도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해당 금융사의 업종에 따라 또다시 업무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금번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간략히 살피자면 총 '3층(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보험업법)'의 '수직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해당 신용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수평적 구조'와 관련하여 또다시 복잡한 얼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신용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기 1층과 2층이 적용되면 그만이나, 금융사 내부의 경우에는 그 소속이나 업무의 형태에 따라 상당히 복잡다단한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보험모집인이나 직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만약 그 상품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보험계약의 체결방식에 대하여는 다시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게 된다. 나아가 유관기관이 취급하는 정보를 살피자면 보험업계의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신용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보험개발원의 경우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간 난삽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복잡다단함은 체제구성의 오류가 아니라, 연혁적인 이유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민간부문에 관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신용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을 딛고 서있는 특별법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신용정보에 관한 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종의 모법으로서 기능하던 법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으로 갑자기 두 개의 모법이 존재하게 된 형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또한 양 입법의 발상도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금융당국이 밝힌 바[5]와 같이 신용정보보호법은 'The 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A)[6]나 'Fair Credit Reporting Act'(이하 FCRA)[7] 등 미국입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분히 유럽입법의 색채가 짙다. 즉 그 내용과 형식

5) 금융감독원,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해명자료(2008), 2쪽, 〈http://english.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308548&idx=1211523449093&bbsid=1207405308548〉, 검색일: 2014.3.1.

6) Pub.L. 106-102; 동법의 전문은 〈http://www.gpo.gov/fdsys/pkg/PLAW-106publ102/pdf/PLAW-106publ102.pdf〉, 검색일: 2014.3.1에서 살펴볼 수 있다.

7) 15 U.S.C. § 1681; 동법의 전문은 〈http://www.ftc.gov/os/statutes/031224fcra.pdf〉, 검색일: 2014.3.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 면면에서 EU의 'Data Protection Directive'[8]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양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기원하였음은 물론 그 입법의 취지 또한 상이하여, 영미의 관련 실무 및 학계에 있어 오랜 논쟁의 소재로 자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9] 따라서 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조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 1.2 내용상의 충돌에 대한 검토

쉬운 예로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앞의 보험사 내부의 개인정보 책임자에 관하여 살펴보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동법 제31조 제1항)'가,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동법 제20조 제3항)'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동법 제27조)'가 지정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동일인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입법상 충돌은 이렇듯 구체적인 실무상의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방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동법 제30조 제2항)'을 '공개'하고,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신용정보활용체제(동법 제31조)'를 '공시'하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취급방침(동법 제27조의2)'을

8) 공식명칙은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이며, 동 지침의 전문은 〈http://www.dutchdpa.nl/downloads_wetten/dir1995-46_part1_en.pdf〉, 검색일: 2014.3.1에서 살펴볼 수 있다.

9)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물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Virginia Boyd, "Financial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 Path to Transatlantic Regulatory Harmonization", *24 Berkeley J. Int'l Law. 939* (2006), 〈http://scholarship.law.berkeley.edu/bjil/vol24/iss3/6〉, 검색일: 2014.3.1 참조.

‘공개’하여야 한다. 중복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10]

이번에는 규정의 부재로 인한 입법공백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동법 제3조)하면서, 다시금 최소수집의 원칙(동법 제16조)과 목적의 달성 후 파기(제21조)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최소수집의 원칙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채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기만 한다고 규정(동법 제15조)하고 있다. 목적의 달성 후 파기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상응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파기가 아니라 오히려 3년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20조 제2항)하고 있거나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경우(동법 제18조 제2항)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최소 3년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는 규정(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수집시의 동의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제3자 제공시(동법 제17조)는 물론 이거니와 일반적인 수집시(동법 제15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수집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제3자 제공시(동법 제32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판단한다면 이렇듯 규정이 없는 경우의 해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실무나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11]이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

10) 이러한 중복규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12)나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9)의 해설서에서도 쉬이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11) 최인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 NIA PRIVACY ISSUES 제4호(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최민희/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2014) 등 참조.

논란의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충돌의 발생 또한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합병 등(이하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하자.[1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동법 제27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17조) 영업양도 등의 당시에 알리기만 하려면 결국 사전에 이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13]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동일한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된다(동법 제32조 제4항 제3호).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그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개인정보를 이전한다고 가정하여도, 영업양도 등의 당시에 정보주체의 동의획득 요부에 관한 규정은 이렇듯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한편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그 영업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예컨대 A카드사가 담보대출 거래업무를 폐지하면서 이에 관한 영업부문만을 B보험사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하면 A카드사의 담보대출 고객으로 수집된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B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의 산정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당초의 수집목적과 상이하다고 해도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동법 33조 제3호).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하여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요율의 산정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

12) 이와 유사한 충돌의 경우는 비단 영업양도 등의 경우만이 아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논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으며, 최신의 글로는 배대헌,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최민희/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2014)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13) 정순섭/양기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정보연구 제1권 제1호(한국금융정보학회, 2012), 55쪽.

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동법 제26조 제3항). 즉 그 대출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었다면 또다시 충돌하는 규정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14]

## 2. 쟁점사항의 분석

### 2.1 입법체제의 정합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신용정보보호법은 미국입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 'GLBA'와 'FCRA'의 규정들과 유사하며, 실제 신용정보의 운용구조에 있어서도 미국의 체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채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양자를 더하면 아마도 이러한 미국의 입법체제와 매우 흡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법체제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15]과 민간부문을 담당하는 개별입법(GLBA, FCRA 등)들로 구분하여 입법하는 소위 'Segment 방식'[16]을 취하고 있으며,[17]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전의 우리나라의 경우와

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 또한 충돌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므로 종된 자산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한정미,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의 합리적 활용방안", 경영법학 제18권 제1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522쪽)와 신용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37집(한국법학회, 2010), 310쪽)가 대립하고 있다.

15) Pub.L. 93-579, 88 Stat. 1896, 1974, 5 U.S.C. § 552a.

16) 정성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01), 259쪽.

17) 김준우/소재선,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0-51쪽.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각국들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법을 두는 소위 'Omnibus 방식'[18]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이나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수차 진행되어 온 바 있는 EU의 각종 지침(Directive)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반법위에 다시금 부문별 특별법들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신용업무에 관하여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of 1974)을 별도로 입법하고 있는 영국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금융부문을 기타의 부문과 특별히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법'이 말 그대로의 모법으로 기능하게 된다.[19] 이러한 체제구성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이하 BDSG)의 풍부한 일반원칙 위에다, 우리의 방문판매법(즉 Teledienstedatenschtzgesetz, TDDSG)이나 정보통신망법(즉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es, IuKDG)에 해당하는 개별입법들을 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20] 이러한 방식을 우리의 입법에 고려하자면, 결국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모법적 기능의 삭제 또는 축소를 의미한다.

결국 우리의 현 입법체제의 혼란은 '구 Segment 방식'과 '신 Omnibus 방식'의 병존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양자가 접경하게 되는 민간부문에서의 마찰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시금 구체제로의 회귀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체제혼란에 대한 정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용정보보호법의 취지와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하는 수밖에 없을

18) 정성구, 앞의 논문, 259쪽.

19) 맹수석, 앞의 논문, 299쪽.

20) Alfred Büllesbach, "Financial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Europe", *The Future of Financial Privacy: Private Choices versus Political Rules*(CEI Staff, 1999), 224쪽.

것이다. 즉 양자의 많은 충돌지점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원칙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신용정보에만 해당하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서로 상응하는 규정의 병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앞으로의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만의 특유한 사항들을 담아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별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체제 안으로 수렴되는 형태로의 개정이 입법체제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2.2 내용수정의 필요성

이왕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손질을 더해야 할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필히 짚어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

먼저 '정보의 가공'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보호법이 예정하고 있는 대상이 소위 '1차 정보'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동법은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유사신용정보' 등을 예정하고 있으나(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실제 실무계에서 의미 있게 유통되는 정보는 이러한 '1차 정보'가 아니라 이를 가공한 '2차 정보' 또는 고도의 가공을 마친 '3차 정보'이다. 즉 수집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신용평점모형'[21]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해내는 '개인신용평점, 신용평가보고, 신용등급'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환이력정보(Payment History), 현재부채수준(Outstanding Debt), 신용거래기간(Length of Credit History), 신용형태정보(Type of Credit Used), 신용조회정보(Pursuit of New Credit) 등[22]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2차 또는 3차 정보'가 신용정보보호

21) 통계모형은 우량고객과 불량고객을 잘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량 확률이 크고 낮을수록 불량률이 크게 나타난다: 황인덕, "신용정보의 체계와 정책 이슈", 금융정보연구 제2권 제2호(한국금융정보학회, 2013), 각주 26 재인용.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가하는 질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가치 및 보호가치는 신용정보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기보다는 신용정보가 표창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2차 또는 3차 정보'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에 오히려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못하는 견해가 있다.[23] 그러나 이는 규정의 해석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위에 가까운 견해로 판단된다. 즉 해석론만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힘든 부분임을 숨길 수 없다.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독일은 'EU Directive'의 해당규정[24]과 이를 계수한 'BDSG'[25]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6]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2차 또는 3차 정보'에 대하여도 신용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개념설정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불리한 정보(Negative Information)'[27]의 제공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전국적인 규모의 신용정보회사(Consumer Reporting Agency)[28]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

22) 황인덕, 위의 논문, 45-48쪽.

23) 정성구, 앞의 논문, 271-272쪽.

24) EU Directive 95/46/EC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Article 15: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s.

25) BDSG § 6a (1) Entscheidungen, die für den Betroffenen eine rechtliche Folge nach sich ziehen oder ihn erheblich beeinträchtigen, dürfen nicht ausschließlich auf eine automatisiert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gestützt werden, die der Bewertung einzelner Persönlichkeitsmerkmale dienen. Eine ausschließlich auf eine automatisierte Verarbeitung gestützte Entscheidung liegt insbesondere dann vor, wenn keine inhaltliche Bewertung und darauf gestützte Entscheidung durch eine natürliche Person stattgefunden hat.

26) Alfred Büllesbach, 앞의 논문, 235-236쪽.

27) 'FCRA'는 불리한 정보를 '고객의 지급지체나 지급불능, 기타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FCRA 제623조 (a)(7)(G)(i).

28) 우리의 신용조회회사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이를 'Consumer Reporting Agency' 또는 'Credit Bureau(CB)'라고 칭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Credit Reference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CRA 제623조 (a)(7)(A)(i)). 그 통지의 기한은 정보의 제공 이전 또는 제공 후 최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FCRA 제623조 (a)(7)(B)(i)). 또한 금융사가 제공받은 고객의 신용평가서(Consumer Reports)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나 제3자를 고객에게 알려주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의와 정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FCRA 제615조 (a) 및 제615조 (b)). 우리 신용정보보호법은 '불리한 정보'의 '제공'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만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도 자발적인 고지가 아니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고지하면 족하다(동법 제36조). 즉 앞서 미국입법의 사례에서 전자는 없고 후자에 해당하는 규정만 있으나, 그 후자 또한 '구두 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shall provide)'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FCRA 제615조의 (a)(1) 및 (a)(2))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아가 문제된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무료로 문제의 신용평가서의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는 미국입법(FCRA 제615조의 (a)(2)(A), (a)(3) 및 (a)(3)(A))에 대하여, 우리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신용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정보'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등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굳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29] 덕분에 정보주체가 설령 통보요구

---

Ag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권(동법 제35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변동사실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요컨대 선량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발적으로 먼저 통지해주기 전까지는, 언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이 제공되었는지를 정보주체가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30] 따라서 '불리한 정보'에 대한 새로운 배려와 정보제공에 따른 통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1]

## Ⅲ. 신용정보 운용구조에 대한 검토

### 1. 신용정보 수집단계에 대한 검토

먼저 실제 수집 및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보험사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보험사 수집정보의 대강[32]

| 구분 | 정보의 내용 | |
|---|---|---|
| 보험상품 관련정보 |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조회 정보 | |
| | 보험계약 체결시의 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보험대상자의 질병정보, 소득과 재산 등 재정정보 |
| | 보험금 지급 시의 정보 | 보험금지급 및 관리 정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
| |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 | |
| | 보험거래관련 인터넷 회원정보 및 마케팅 정보 | |

29) 정순섭/양기진, 앞의 논문, 45-46쪽.

30) 맹수석, 앞의 논문, 310-311쪽.

31) 이에 관하여는 장래의 행위에 대한 개연성 정도(Wahrscheinlichkeitswert)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신용평가절차(Scoring Verfahren)의 적법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 BDSG § 28b 및 § 29 (6) 등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32) 이 표는 김경환, "보험정보 리스크 관리 -최근 동향과 대응-",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 | |
|---|---|---|
| 금융상품 관련정보 | 전자금융거래 회원가입 시의 정보 | |
| | 대출거래 시의 정보 | 대출계약정보, 신용평가정보, 신용능력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
| |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의 정보 | 투자상품 거래 관련정보, 투자목적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
| 기타의 정보 | 보안관리 관련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관련 정보,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정보 |
| | 모집종사자 관련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모집종사자 관련정보 |
| | 인터넷 회원 관련정보 | |
| | 마케팅 정보 | |
| | 보험사 직원 관련정보 | |

표에서 살필 수 있듯이 보험사라 하더라고 단순히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집되는 정보는 해당 상품거래의 횟수에 비해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보험상품 계약자가 추가로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상품 계약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존의 보험상품 관련정보에다 금융상품 관련정보가 더해지고 거기에 전자적 거래정보나 인터넷 회원관련 정보까지 추가되면서, 결국 계약자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집되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점은 쉬이 부정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또한 하나의 회사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가 이렇듯 다양하다 보니, 주무 부처를 골라내는 일도 그리 쉽지 않다.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부처일 것인데, 이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이한 부처들이 진행하는 각기 따로 진행하는 점검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경제적인 일인가?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최근의 뉴스들은 또 다른 위원회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여부를

동계 정책토론회 자료(2014), 10쪽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두고 보도[33]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진정 바람직한 정책인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 2. 신용정보 집중단계에 대한 검토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되어진 정보가 집중 또는 제공되는 상황을 살펴보자.

〈표 2〉 보험유관기관의 정보의 집중 및 제공의 현황[34]

| 구분 | 보험개발원 | 손보협회 | 생보협회 |
|---|---|---|---|
| 기초 통계자료 | 보험종목별 기초통계자료 | | |
| 계약인수 관련자료 | -장기보험 계약자료(의료비 비례보상 등)<br>-보험전산망(자동차 보험 등)<br>-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조회시스템(공제기관) | -손해보험 통합시스템 개발<br>-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조회시스템(손해보험사) | -계약정보 통합시스템(계약심사 관련정보)<br>-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조회시스템(생명보험사) |
|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 -보험사고 정보시스템(ICPS)<br>-적하/선박 공동인수자료 | -보험범죄 유의자 조회시스템(자동차, 장기) | -보험사기 유의자 조회시스템(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관련 정보) |
| 대국민 조회업무 | | -사망자 보험가입 조회시스템<br>-생존자 보험가입 조회시스템<br>-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 -사망자 보험가입 조회시스템<br>-생존자 보험가입 조회시스템<br>-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
| 기타 | -교통법규 위반자료<br>-자동차 등록자료<br>-자동차의무보험 가입/미갱신 자료<br>-중고차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자료(Car History) | | |

33) 이데일리, "박대통령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조속히 추진'", 2014.2.25; 연합뉴스, "현오석, '금융소비자보호원 조속히 설립'", 2014.2.28 등.

34) 이 표는 김경환, 앞의 자료, 11쪽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업계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2호)'으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협회에서는 상기의 표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각종의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위해 집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가 가히 방대할 것임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그 집중이 가능한 신용정보의 수에 대하여, 2002년에는 25종으로 정했다가 10년 후인 지난 2012년에는 84종으로까지 확대하여 승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한 바 있다.[35] 이렇듯 방대한 정보의 집중에 따른 오남용의 가능성은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의 인수나 보험금의 지급심사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조회하다 적발된 사건, 즉 소위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의 건수가 생명보험의 경우 4,696건, 손해보험의 경우 3,568건에 이른다는 '2012년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36] 또한 이러한 예는 단지 보험업계만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른 부문, 즉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집중수준이 '50% 이상 15개국' 가운데 1위로서 '100%'를 달성하고 있고, 그 정보의 내용 또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수준(6점 만점에 6점)임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건수 또한 과거 4년(2009~2012)간 전 세계에서 1위이었다는 세계은행의 평가[37]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아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1

35) 노컷뉴스, "개인정보 집중, 유출사고 '물폭탄' 될라", 2014.2.22.

36) 김경환, 앞의 자료, 12쪽.

37) 이는 공적 신용정보 집중기관 정보비율에 관한 통계로서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임: 이은우, 앞의 자료, 22쪽.

호)', 즉 은행연합회에서의 사정은 어떠한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5개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수집 및 집중한 막대한 정보들을 취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나 '전기료 납부실적', '정부 납품실적', '국외 이주 신고 내용'까지(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그야말로 세밀하기 그지없는 정보도 모두 받아볼 수 있다. '전방위적'으로 정보가 집중된다는 표현 이상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듯 엄청난 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일종의 '사업자들의 협의체'라 볼 수 있는 은행연합회로 지정되어있다는 점은 작지 않은 논란거리이기도 하였다. 설사 은행연합회가 법적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요건(신용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혹여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중심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의혹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아왔다.[38] 이러한 난점에 대하여, 최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4월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39]는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Ⅳ. 나오며

두 가지의 의문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제시하면서, 본고의 결론을 갈음하기로 한다. 이미 글의 해당부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견을 피력하기도 했거니와, 글의 분량상 이를 또다시 언급하여 정리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본고를 준비하면서 상기의 '표 2' 부분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38) 내일신문,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③ 외국의 신용관리 법제도] 프랑스는 국가에서 관리, 미국은 민간이 담당", 2013.1.10.

39) 조선비즈, "정부, 개인 신용정보 종합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립 추진", 2014.2.24.

의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먼저 또 다른 보험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경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표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숙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개발원은 신용정보보호법상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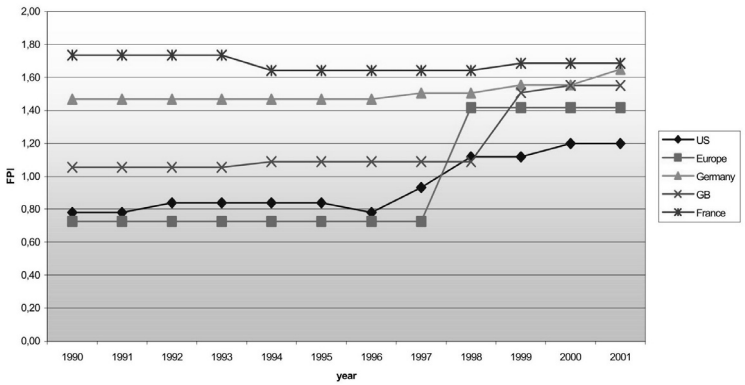
다음으로 상기의 표의 내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보험업무 고유의 특성상 '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정의개념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신용정보보호법에서도 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념설정이 헌법상의 인격권 기반위에서 진행된 것이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의 고려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론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보험정보라는 개념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라보면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망자라 하여도 그 정보에 대한 보호가치는 현실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생존자인 보험수익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고 실제로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피보험자와 관련된 정보는 사망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관점은, 유럽신용조사기구(The European Research Institute, ECRI)가 실시한 유럽과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 지수(Financial Privacy Index)'에 관한 연구물[40]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운용구조는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대분할 수 있다. 미국은 민간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가 사적 계약에 기초해 신용정보를 공유하나, 프랑스는 소위 '민간CB'가 없고 법적 강제력을

40) Nicola Jentzsch, *The Regulation of Financial Privacy: The United States Vs. Europe*(European Credit Research Institute, 2003)참조.

통해 신용정보의 집중을 강제하는 'PCR(public credit registry)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일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41] 다른 유럽 국가들은 'PCR'과 'CB'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상이한 조건을 가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동 연구물은, 1990년에서 2001년의 기간 동안의 '금융 프라이버시 지수'를 측정[42]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도안과 같다.

〈그림 1〉 'ECRI'의 'FPI' 지수(1990-2001)[43]




위의 도안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유럽국가에 비해 '금융 프라이버시 지수'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44] 이렇듯 미국의 지수가 유럽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자

41) 이러한 구조하에서 프랑스는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The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가, 미국은 너무나도 유명한 '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2) 구체적인 측정의 방식에 관한 상세는 Nicola Jentzsch, 앞의 자료, 13-15쪽 참조.

43) 이 도안은 Nicola Jentzsch, 앞의 자료, 16쪽에서 인용하였다.

44) 물론 이 연구물이 제법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45]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① 정보의 취급자들에 대한 주무기관의 컨트롤 능력, ② '옵트아웃(Opt-out)'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옵트인(Opt-in)'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방식'의 차이,[46] ③ '정보의 과잉수집(Excessive Data Collection)'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어떠한가?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쳐 보고자 맘먹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없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투고일 2014년 4월 29일, 심사(의뢰)일 2014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3일)

**주제어 :** 신용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정보과잉수집

45) Nicola Jentzsch, 앞의 자료, 15-17쪽.

46) '옵트인'은 '사전동의'를 의미하고, '옵트아웃'은 '사후부동의'를 말한다: 오길영,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민주법학 제53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232쪽.

# 참고문헌

## 1. 논문

김경환, “보험정보 리스크 관리 -최근 동향과 대응-”,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동계 정책토론회 자료, 2014, 1-33쪽.

김준우/소재선,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3-80쪽.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289-317쪽.

배대헌,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최민희/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2014, 7-25쪽.

오길영,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민주법학 제5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221-248쪽.

_____,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일감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55-186쪽.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진선미/국회의원 최민희/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유출대책특위, 2014, 26-54쪽.

정성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1, 245-324쪽.

정순섭/양기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정보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금융정보학회, 2012, 23-58쪽.

최인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 NIA PRIVACY ISSUES 제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1-6쪽.
한정미,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의 합리적 활용방안”, 경영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481-528쪽.
황인덕, “신용정보의 체계와 정책 이슈”, 금융정보연구 제2권 제2호, 한국금융정보학회, 2013, 29-65쪽.

Alfred Büllesbach, “Financial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Europe”, *The Future of Financial Privacy: Private Choices versus Political Rules,* CEI Staff, 1999, 222-250쪽.
Virginia Boyd, “Financial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 Path to Transatlantic Regulatory Harmonization”, *24 Berkeley J. Int’l Law. 939,* 2006, 939-1008쪽.

## 2. 기타

금융감독원,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해명자료, 2008.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2014.1.8자.
_____,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2014.1.22자.

Nicola Jentzsch, *The Regulation of Financial Privacy: The United States Vs. Europe,* European Credit Research Institute, 2003.

[ Abstract ]

# Legal Study on the Credit Information Registry

Kil-Young Oh*

This paper aims at pointing out several problems o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f credit registry system.

The most problematic is conflict of relevant regulations, which ar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is reason, there is no appropriate regulation but the importance of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 This is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about personal credit information. Here, I consider the current credit registry organization, that type of the United States is complicated but not effective, and criticize the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confused management structure of credit information and excessive data collection.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tried to suggest two unsolved doubts about deficiency of current legislation and noticeable analysis report, that bring need of rethinking about our credit regulation structure. With regard to these issues, I want to emphasize that confused credit legislation produces excessive data collection and immoral organiz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

**Key Words :**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Credit Registry Agency, Credit Bureau, Excessive Data Collection